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22

발의연월일: 2024. 8. 27.

발 의 자 : 임종득 • 유용원 • 강선영

김예지 · 강대식 · 박수민

박정하 • 유영하 • 이헌승

인요한 • 조승환 • 박대출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예비역의 장교·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「군인사법」은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의 급속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병력 구조를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정예화된 예비전력을 확 충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교 등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는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전력의 가용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에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72조제2항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322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군인사법」 제41조 단서에 따른 퇴역 대 상자가 예비역에 지원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2조(병역의무의 종료) ① (생	제72조(병역의무의 종료) ① (현		
략)	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군인		
	사법」 제41조 단서에 따른 퇴		
	역 대상자가 예비역에 지원한		
	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	
	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		
	<u>수 있다.</u>		
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	③ 제1항 및 제2항		
을 마치면 장교·준사관 및 부			
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, 병			
및 대체역의 경우는 면역이 된			
다.			